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95,727,062	8,871,812
일반회계	289,678,696	8,690,361
특별회계	6,048,366	181,451
기타특별회계	6,048,366	181,451
상수도특별회계	1,527,783	45,83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64,587	28,93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76,397	32,292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750,182	22,50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87,000	5,61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1,034,345	31,03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87,715	8,631
주차장특별회계	194,691	5,841
기반시설특별회계	25,666	770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38,693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